

의 안 번 호	1960	<b>[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b> <b>심 사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7. 11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7. 11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7. 29.(금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세무2과장 조옥임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징수법」(2022. 1. 28. 시행),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(2022. 1. 28. 시행)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개정(2022. 3. 18. 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조문 정비  
(안 제4조, 제10조)
-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인용 조문 정비(별지 제1호서식)
- 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 관련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0조)
-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3조의3
-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91조의11
-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제73조의8

### **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**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세징수법」 등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### 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 큰 거 법 규

## 지방세 징수법

제103조의3(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·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,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(이하 “예술품등”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(이하 “전문매각기관”이라 한다)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,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[본조신설 2022. 1. 28.]

##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

제91조의11(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(이하 “전문매각기관”이라 한다)을 선정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(이하 “예술품등”이라 한다)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

2. 국세청장이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

· 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.

③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.

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·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2. 1. 28.]

##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

제73조의8(매각대행 수수료)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 <개정 2022. 3. 18.>

[제52조의3에서 이동 <2022. 3. 18.>]